

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4년 4월 12일

○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2일

3. 제안이유

○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잘못된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○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자격요건을 신설하고, 종전에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수정·반영(안 제7조)

○ 성과평가 예외 대상 사무에 관한 인용조항을 올바르게 수정(안 제17조1항)

○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,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5조 및 제8조의2)

5. 검토의견
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잘못된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,
- 17개 시·도 중 충청북도 등 5개 시·도가 위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반영한 것임.
- 이에 따라 안 제7조에 선정심사위원회의 자격요건을 변호사, 공인회계사, 건축사, 세무사, 공인노무사, 기술사 등 전문자격자 및 대학 부교수 이상 등으로 명시한 것은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